

#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,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.
- 나.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,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,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연 사무명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
- 나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1) 추진근거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) 추진 필요성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·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, 중앙 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

## 다. 출연 사무내용

- 1)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- 2) 지방행정·지방재정·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
- 3)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
- 4)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

## 라. 출연 기관 개요

### 1) 연 혁

- '84. 9월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(서울시 마포구)
- '86. 5월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
- '15.10월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(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)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
- '16.12월: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

### 2) 소재지: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(반곡동)

### 3) 위치도



### 4) 규 모

- 조 직: 원장, 부원장, 1감사관, 1센터, 4실, 1단, 1국
  - ▶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, 연구기획실, 지방행정연구실, 지방재정연구실, 지역발전연구실, 사회혁신연구단, 행정국
- 인 력
  - ▶ 이 사 : 총 30명 (당연직 22명, 임의직 8명)
    - ※ 당연직 이사: 원장 1, 행정안전부 4, 각 시·도 기획조정실장 17
  - ▶ 직 원 : 정원 102명 / 현원 81명

(2019. 7. 31. 현재, 단위:명)

구분	계	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투자분석직
정원	102	1	63	18	2	18
현원	81	1	47	17	1	15
과부족	△21	-	△16	△1	△1	△3

### 5) 지원시설

- 규 모: 청사 건물 지상3층, 지하2층 / 연면적 5,742.68m<sup>2</sup>

- 건축년도: 2016년('16.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)
- 시설현황

층별	주요 용도
지하2층	주차장, 체력단련실, 기계실, 전기실
지하1층	자료실
1층	로비, 행정국, 연구기획실
2층	임원실, 지방재정연구실, 대회의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
3층	자치행정연구실, 지역발전연구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, 여성휴게소

### 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'20년 출연금 편성액(안): 250백만원 ※ '19.7월말 현재
- 2) 산출근거
  - 지방자치단체(17개) 출연금 총 4,150백만원
    - ▶ 특별·광역시·도(16개) 출연금: 각 250백만원
    - ▶ 세종특별자치시(1개) 출연금: 150백만원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- 2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유 진 (☎ 2133-6747)